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3991
----------	-------

제안연월일 : 2023. 8.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7298호)	박대수	2021. 1. 11.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 3. 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387호)	윤준병	2021. 7. 7.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1. 9. 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나.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2. 5. 9.)에
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

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2. 5. 1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운영되는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분양을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지를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나. 부지를 양도받은 관리기관이나, 관리기관에 매수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지를 분양받은 자는 3년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 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 대신 부지를 분양·매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의무자의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 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의무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을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처분을 위해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는 경우(매수신청한 자에게 해당 부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 개발·설치·증설 계획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5조”를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시정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의무미이행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설치의무미이행자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29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29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준공인가·사용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

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 style="margin-top: 20px;">1. · 2 (생략) <신설></p>	<p>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 ----- ----- ----- -----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 ----- --.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p>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처분을 위해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는 경우(매수신청한 자에게 해당 부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

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3항 -----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 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

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 ·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 · 설치 · 증설 계획-----

-----.

<신 설>

<신 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 다음 각 호의
계획-----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계획

<신 설>

<신 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생략)
- ② ~ ⑪ (생략)

<신 설>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 개발·설치·증설 계획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

-----.

1. 제5조 및 제5조의2-----

2. (현행과 같음)
-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시정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의무미이행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설치의무미이행자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제29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
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는 제29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
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
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